

● 이사회운영규정(0201)

제정 1997. 12. 1. 규정 제 3호	개정 2003. 1. 2. 규정 제118호	개정 2010. 1. 25. 규정 제336호
개정 1998. 1. 1. 규정 제 30호	개정 2004. 6. 25. 규정 제147호	개정 2014. 5. 2. 규정 제443호
개정 1998. 7. 11. 규정 제 36호	개정 2004. 12. 28. 규정 제162호	개정 2015. 4. 29. 규정 제463호
개정 1999. 12. 21. 규정 제 74호	개정 2006. 12. 28. 규정 제215호	개정 2016. 5. 9. 규정 제484호
개정 2001. 4. 12. 규정 제101호	개정 2007. 3. 28. 규정 제244호	개정 2018. 9. 10. 규정 제540호
개정 2002. 12. 4. 규정 제115호	개정 2009. 5. 28. 규정 제324호	개정 2019. 5. 7. 규정 제5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한 소집의 경우에는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02.12.4, 04.6.25, 10.1.25, 14.5.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0.1.25, 14.5.2>

제3조(회의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6.12.28>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07. 3.28, 10.1.25>

③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의안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한다. <개정 02.12.4, 04.6.25, 10.1.25>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07.3.28, 10.1.25>

제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5.4.29>

제5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04.12.28>
6.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신설 10.1.25>
7.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03.1.2>
9. 자금의 장·단기 차입에 관한 사항. 단,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입은 제외함 <개정 03.1.2, 18.9.10>
10.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03.1.2>
11.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03.1.2>

- 12.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09.5.28>
- 13.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03.1.2>
- 14.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 15.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2(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기별 경영실적
- 2. 감독기관의 승인인가가 필요한 이사회 의결안건 중 승인·인가를 받지 못한 사항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한 내용
- 4.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수립
- 5. <삭제 09.5.28>
- 6.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06.12.28>

제8조(재심요청) ①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 의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 상위 법령, 조례, 정관의 개정으로 조문의 정리, 용어의 변경, 별표 서식의 개정·폐지 및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5.9>

- 1. 임원 인사규정 <개정 19.5.7>
- 2. 직제규정
- 3. 이사회운영규정
- 4. 취업규정

- 5. 보수규정
 - 6. 연봉제시행규정
 - 7. 복리후생규정
 - 8. 인사규정
 - 9. 감사규정
 - 10. 개발업무규정 <신설 18.9.10>
 - 11. 건설공사집행규정 <신설 18.9.10>
- [개정 98.1.1, 03.1.2, 18.9.10]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기록관리하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방법의 특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7.11>

제12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2. 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이사회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통보 및 처리결과 회보) ① 이사회 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안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안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사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06.12.28>

제16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부 칙<97. 12. 1>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 1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4. 12>
이 규정은 200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2. 4>
이 규정은 200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5.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5. 2>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4. 29>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5. 9>
이 규정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9. 10>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5. 7>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0조 제1항 관련)】

이사회부의안

제 회이사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 호
제안부서		제안자	
건 명			
1. 의 결 주 문 2. 부 의 근 거 3. 제 안 사 유 4. 주 요 골 자 5. 참 고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제10조 제2항 관련)】

이사회회의안 관리대장

(의결안건, 보고안건)

회의차수	년 월 일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내용

【별지 제3호 서식(제10조 제2항 관련)】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다음과 같이 년도 제 회 이사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 의 안 :

의안번호	건 명	제안자	소관부서

4. 부의안건 : 별첨. 끝.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인)

【별지 제4호 서식(제14조 관련)】

(표지)

년 월 일

제 회 이 사 회 의 사 록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별지 제4호의2 서식(제14조 관련)】

제 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

재 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이 사	감 사	계	이 사	감 사

※ 불참인원 : (명)

4. 의장 :

5. 기록자 :

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회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별지 제5호 서식(제15조 관련)】

의안심의의결록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사항 :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사항 :			

【별지 제6호 서식(제4조 제3항 관련)】 <신설 15.4.29>

위 임 장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제 회 이사회(20 . . .)에 다음의 소속
직원이 대리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대 리 인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위임자 理 事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장 귀하